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

I. 근거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II. 공시사항

1. 일시	2021년 06월 09일 (08:00)
2. 장소	엘엔에스자산운용(주) 본점 회의실
3. 주주의 참석률	100% 참석
4.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100%
5.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
6. 의결권 행사 주식수	400,000주 (100%)
7. 변경내용	첨부 참조

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경민 (직인생략)

(별지)

정관 일부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p>제 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제 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nsasse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로 변경</p>
<p>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p> <p>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②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7종으로 한다.</p> <p>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 각항과 다른 주식,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제 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p> <p>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u>기명식 종류주식</u>으로 한다.</p> <p>②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u>오백주권</u>,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u>8종</u>으로 한다.</p> <p>③ 회사가 발행하는 <u>종류주식</u>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종류주식 추가 권증 추가 종류주식 유형 명시</p>
	<p>제 8조의2(제1종 우선주식)</p> <p>① 회사는 종류주식으로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 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제1종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 할 수 있다.</p> <p>②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단, 제1종 우선주식을 포함하여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2%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④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제1종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참가적).</p> <p>⑤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비누적적).</p>	<p>신설</p>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p>제 9조(신주인수권)</p> <p>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또는 각종 연기금 포함), 일반법인(또는 특수법인),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p>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 9조(신주인수권)</p> <p>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이사회의 결의로</u>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또는 각종 연기금 포함), 일반법인(또는 특수법인),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p>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p> <p>중복 문구 삭제</p>
	<p>부칙 <2021. 05.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추가</p>

끝.